

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장학금지급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교내장학금

제2조(신입생장학금) 신입생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가천 장학금 :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전체수석 신입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월30만원을 지급한다. (개정 2012.12.26.)
2.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: 장학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수능성적 우수장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. 단, 예체능계열 및 한의과대학은 제외하며, 간호학과는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을면제한다. (개정 2013.12.26.)
3. 계열별수석 장학금 :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인문, 자연, 의학, 예체능계열의 계열별 입학성적이 가장 우수한 신입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. 다만, 전체수석을 배출한 계열은 제외한다. (개정 2013.12.26.)
4. IT대학 장학금
 - 가. 소프트웨어 설계·경영학과 입학성적우수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전액(입학금 포함) 및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
 - 나. 소프트웨어설계·경영학과 정시 최초 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에게는 1년간 등록금전액(입학금 포함)을 지급할 수 있다.
5. 대학수석 장학금 :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단과대학별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입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1년간 등록금을 면제한다. 단, 계열별수석을 배출한대학은 제외한다.
6. 학과(부)별수석 장학금 :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학과(학부)별로 성적이 가장

3-5-3~2 제3편 행 정

우수한 학생에게는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.

7. 바이오나노 장학금

가. 바이오나노학과(정시, 수시) 입학성적우수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전액(입학금 포함) 및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3.12.26.)

나. 바이오나노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에게는 1년간 등록금전액(입학금 포함)을 지급할 수 있다.

8. 법과대학 입학성적 우수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전액(입학금 포함) 및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3.12.26.)

9. 가천고시장학생으로 입학한 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전액(입학금 포함) 및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3.12.26.)

10. 한의과대학 장학금

가. 한의과대학입학자 중 계열별 최초 합격 순위 2위 이내인 자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(입학금 포함)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3.12.26.)

나. 위 가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입학자중 계열별 최초합격 순위 4위 이내인 자는 2년간 등록금 전액(입학금 포함)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3.12.26.)

11. 글로벌경영학트랙 장학금 (신설 2013.02.27)

가. 글로벌경영학트랙(정시, 수시) 입학성적우수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전액(입학금 포함) 및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3.12.26.)

나. 글로벌경영학트랙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에게는 1년간 등록금전액(입학금 포함)을 지급할 수 있다.

12. 경찰·안보학과 장학금 (신설 2013.02.27)

가. 경찰·안보학과(정시, 수시) 입학성적우수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전액(입학금 포함) 및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3.12.26.)

나. 경찰·안보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에게는 1년간 등록금전액(입학금 포함)을 지급할 수 있다.

13. 금융수학과 장학금 (신설 2015.02.13.)

가. 금융수학과 입학성적우수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(입학금 포함) 및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

나. 금융수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에게는 1년간 등록금 전액(입학금 포함)을 지급할 수 있다.

14. 의과대학 장학금 (신설 2015.02.13.)(개정 2015.08.11.)

가. 의과대학(수시, 정시) 입학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(입학금 포함)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나. (삭제 2015.08.11.)

15. 학술교류 장학금 :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학교의 졸업생이 입학할 경우 입학금 일부를 면제한다. (신설 2015.02.13.)

16. 학·석사통합과정 입학장학금 : 학·석사통합과정 입학자에게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(신설 2015.12.29.)

17. 제1호 내지 제13호의 장학금 지급기준(개정 2015.08.11.)

가. 입학 후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12학점(최종 학년도는 9학점)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(개정 2012.09.25)

나. 입학 후 직전학기 평균평점은 3.5점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
다. 장학금을 2회이상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성적우수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.

18. 신입생 장학금 중 장학금이 중복될 때에는 이중수혜를 금지하며, 학생이 유리한 것으로 우선 지급한다. (개정 2013.12.26.)

제3조(성적우수장학금) ①재학중 소정의 학점을 신청, 수강하여 해당학기 학업 성적이 취득학점 12학점(다만, 총장이 인정하여 학점등록을 허가한 장애학생 및 4학년 1학기는 9학점이상 가능) 및 평점평균 3.0이상이고 각학과 학년별 성적이10%이내에 속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(개정 2012.09.25)

②제1항의 장학금은 각 학과 학년별 재학인원의 10%이내로 한다. 단, 배정액 산출은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제2항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해당 학생의 신청을 받아 각학과 교수회의에서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④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최초 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학사개편에 따라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학과(전공)의 경우 존치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.(개정 2018.08.23.)

제4조(저소득층장학금)①장학금지급규정 제4조 3항의 가계곤란자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제3조 ②항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일컬으며 최저생계비 기준 개념으로는 생계곤란층 내지 생활이 어려운 4가지(기초생활, 차상위, 차차상위, 기타)계층을 말한다.

②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일정액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학업성적이 취득학점 12학점(최종학년은 9학점) 및 평점평

3-5-3~4 제3편 행 정

균 2.5이상이어야 한다.(개정 2012.09.25)

가. 인간사랑 :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

나. 이웃사랑 : 차상위 계층자에 해당하는 자

다. 공동체사랑 : 차차상위 계층자에 해당하는 자

라. 지역사랑 : 기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

제5조(보훈장학금) ①보훈법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소지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,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 포함하여 면제한다. 단, 보훈자녀는 입학 후 직전학기 실점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②제1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는 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 재학중 유학, 복학, 기타의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학생복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재직자녀장학금) ①학교법인가천학원 산하 설치기관(학교및부속병원)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 또는 의료법인길의료재단 산하 의료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. 단, 입학후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.5이상이어야 한다. (개정 2015.12.29.)

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교직원이 사망, 정년퇴직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이미 지급받아 오던 직계자녀에게는 졸업시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③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교직원이 중도퇴직, 학기 중 중도입사 할 경우의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(신설 2016.08.30.)

제7조(공로장학금) ①학술·체육·사회봉사·문화·예술활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장학대상자라도 해당학기 학업성적이 취득학점 12학점 (최종학년은 9학점) 및 평점평균 2.5미만인 경우 면제하지 아니한다.

③공로장학금은 입학 후 두 번째 학기부터 여섯 번째 학기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간부장학금) ①학생회 등에서 활동을 한 간부학생 중 해당학기 학업성적이 취득학점 12학점 (최종학년은 9학점) 및 평점평균 2.5이상인 자에게는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며,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부장학금

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2.09.25)

②최종 학년 2학기에 활동한 간부학생중 취득학점 8학점 및 평균평점 2.5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1학기과 동일한 간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근로장학금)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교내 행정 부서에 근로봉사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일정액의 등록금을 면제한다.

제10조(전문계고특별장학금) ①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특별전형 입학자에 한하여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입학 당시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일정액의 등록금을 면제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장학생은 입학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취득학점 12학점(최종학년은 9학점) 및 평점평균 2.5이상이어야 한다.(개정 2012.09.25)

제11조(특기자장학금)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특기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.

제11조의 2(음악콩쿨 및 미술대전, 창작문학백일장 장학금) ①본교에서 주최한 가천음악콩쿨 및 가천미술대전, 가천창작문학백일장에서 소정의 성적을 거둔 자가 본교에 입학하여 해당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교내장학금지급기준에 의하여 등록금 전액 또는 일정액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입학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취득학점 12학점(최종학년은 9학점) 및 평점평균 3.5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 음악콩쿨 대상자는 12(최종학년은 9)학점 및 평점평균 3.0이상으로 한다.(개정 2012.09.25)

②제1항의 장학생은 입학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취득학점 12학점(최종학기는 9학점) 및 평점평균 3.5(음악콩쿨 대상자는 동일한 학점 및 평점평균 3.0) 미만일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자격이 상실되며 바로 직후 학기에 취득학점 12(최종학기는 9)학점 및 평점평균 3.5(음악콩쿨 대상자는 동일학점 및 평점평균 3.0) 이상을 취득하면 자격이 복원된다. 단, 복원의 기회는 1회에 한한다.(개정 2012.09.25)

③장학금이 중복될 때에는 학생이 유리한 것으로 우선 지급한다. (개정 2013.12.26.)

제11조의 3(어학특기 및 과학·수학·전산정보특기 장학금) ①장학위원회에서 정한 특기자 기준에 적합한 자가 본교에 입학한 경우 2년간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입학후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한 취득학점 및 성적, 자격 상실자의 복원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의 2를 준용한다.

②장학금이 중복될 때에는 학생이 유리한 것으로 선택한다. (개정 2013.12.26.)

제12조(외국인장학금) ①외국인 학생으로서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

3-5-3~6 제3편 행 정

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액의 등록금(입학금 포함)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 외국인장학생을 선발하는 부서에서 장학금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기간동안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

② 해당학생은 외국인 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장학금 수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어학우수 장학금) 글로벌리더 인재를 육성하고자 어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기타의 장학금) 제2조 내지 제13조의 장학금 이외에 다음 각호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복지장학금 : 학생복지시설의 영리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.
2. 학군단장학금 : 학군단후보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학군단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3. 고시반장학금 : 사법시험, 행정고시, 외무고시, 공인회계사시험, 기술고시를 위한 고시반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각 학기 고시반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4. 가천고시장학금 : 수능성적 우수자중 국가고시와 관련된 학과 및 전공에 입학한 자로서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자 중 고시반에서 고시준비를 하는 자에게 입학금 및 4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 하고 월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. 단,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이어야 한다.
5. 경시대회장학금 : 영어경시대회, 모의취직시험, 모의대학원 입학시험, ICEC 등 교내의 각종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6. 가천가족장학금 : 본교에 직계가족이 2인 이상이 동시에 재학중인 경우 저학년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입학후 장학금 수혜시 성적제한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.0 이상이어야 한다.
7. 동문가족장학금 : 본교 학부를 졸업한 자의 자녀가 입학할 경우 입학시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8. 해외교류장학금 : 교환유학생, 학점인정 해외수업, 파견 학생 및 외국의 교환 유학생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
9. 제1호 내지 제3호, 제5호의 해당자라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

2.5미만인 경우 면제하지 아니한다.

10. 고시장학금 : 장학금지급규정 제4조 12항의 국가고시라함은 고등(행정, 외무, 기술 등)고시에 한하며,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이라함은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관세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노무사, 법무사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한하며 아래와 같이 장학금 및 장려금을 지급한다. (개정 2014.03.31.)

가. 5급 이상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1차 합격자 : 합격한 당해 학기부터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되는 학기까지 등록금 전액 지급 (개정 2014.03.31., 2015.02.13)

나. 5급 이상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: 당해학기부터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급(개정 2015.02.13.)

다. 7급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: 합격한 당해 학기부터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급(개정 2015.02.13.)

라. 9급 이하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: 합격한 당해 또는 다음 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(개정 2015.02.13.)

마. 고시장려금 : 위 가목의 합격자가 2차시험 응시자격이 유지되는 학기까지 등록금이외에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고시장려금의 경우 휴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5.02.13.)

바. 전공과 관련이 없는 국가고시 또는 자격시험의 경우, 장학위원회에서 고시장학금 및 장려금 지급여부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.(개정 2015.02.13.)

사. 우수편입생 :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및 이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춘 자가 법과대학에 편입학하면 졸업시까지 등록금(입학금포함)전액 지급 및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(개정 2015.02.13.)

11. 학술지원장학금 :

가. 전임교원은 학술지원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년 교원은 추천할 수 없다. (개정 2012.09.25)

나. (삭제 2012.09.25)

다. 장학생의 해당학기 취득학점이 12(최종학년은 9)학점 및 평균평점이 3.0에 미달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 (개정 2012.09.25)

12. 군장학금 :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로서 등록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입학후 직전학기 학업 성적이 평점평균 2.5이상이어야 한다.

13. 문화교류장학금 : 글로벌 마인드 및 상호 언어교류향상 등을 통해서 애교

3-5-3~8 제3편 행 정

심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리더십 함양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4. 봉사 장학금 :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및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15. 연수(국내외) 장학금 : 교육연수, 역사기행 등 연수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16. 계약학과 장학금 : 산업체 등이 채용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한 학과 또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17. 장애도우미 장학금 : 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내외활동을 보조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18. 공모전 장학금 : 교내외의 각종 공모전이나 경시대회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19. 자격증 장학금 : 본교에서 정하는 각 분야별 자격증, 어학성적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20. 가천나눔장학금 : 장학금지급규정 제4조 16항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에게는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(신설 2015.12.29.)
21. 창업장학금 : 장학금지급규정 제4조 17항에 의해 창업(교육)활동을 통해 축적한 창업마일리지에 따라 일정액의 창업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 (신설 2017.08.29.)
22. 기타 장학금 : 건강장학, 격려, 다자녀, 총장특별, 튜터 등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장학금 수혜자격과 횟수) ①모든 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학사 편제년한(4년제:8학기, 5년제:10학기, 6년제:12학기)를 초과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.

②보훈본인장학금, 총장특별장학금, 고시장려금, 학점등록 장애학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위의 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 장 교외장학금

제15조(교외장학생의 배정, 추천) 교외장학생의 배정, 추천 및 지급방법은 다음

과 같다.

배 정	장학금 출연자로부터 학과, 학년, 수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대로 배정하고,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정책에 의거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추 천	① 장학금기탁자로부터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소속학과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장학금기탁자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천분야별직제순으로 해당 단과대학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는다.
장 학 금 수령보고	각 대학장은 외부로부터 학생복지처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급되는 장학금 또는 자체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생복지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지급방법	외부장학금은 학교 장학계좌로 입금 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.

제16조(교외장학생의 계속추천) 교외장학생으로 추천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당해 장학단체에 계속하여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4 장 장학생의 선정 및 관리

제17조(장학생선정의 기준) 장학생선정의 기준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, 장학금신청자 중에서 다음에 정한 순위로 신청한다.

1.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2.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
3. 무의탁학생 또는 보호자가 구호대상자인 학생으로서,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
4.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

제18조(장학생의 교체추천) 장학생으로 확정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장학생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학과장이 등록개시일 이전에 장학생 교체신청서를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장학금지급규정 제5조(장학금 지급의 제한)에 해당하는 경우
2.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
3. 휴학원을 제출한 경우

3-5-3~10 제3편 행 정

- 4. 본인이 장학금을 포기한 경우
- 5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사유가 생긴 경우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의 적용은 2013-1학기 장학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